

<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(0~11개월)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>

★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(0~11개월)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★

1. **(보육료 신청)**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포(온라인), 읍·면·동 주민센터(방문)에서 부모급여(현금) → **부모급여(보육료)로 지원 자격변경을 반드시 신청**하셔야 연장 보육, 장애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 514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(예: 0세반 연장보육료 시간당 3천원 등)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부모급여(보육료)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본보육료 514천원 및 연장보육료 등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.

2. **(재원 중)**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. 지원되는 전액을 결제하셔야 하므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, 단기간,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(현금)으로 신청·변경하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* 3월 입소, 9월 퇴소하는 경우에는 4~8월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기간임

3. **(입·퇴소시)** 입·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, 기본보육료 514천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이후 익월 또는 익익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우며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,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. (자녀가 만 0세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)

* '23.3.15 어린이집 입소

- 어린이집 지급액(기본보육료의 경우) 514천원 × 14(재원일수)/26일(보육일수)= 276천원

- 부모 지급액: 514천원 - 276천원 =238천원(익월 또는 익익월에 지급)

4. 입·퇴소 당월에 부모급여(현금)을 받으신 경우(25일 70만원 입금)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.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 지원은 취소되며, 부모급여 받으신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하니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